



# 세계변호사협회(IBA) 국제중재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지침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BA 이사회의 결의로 2024년 5월 25일 채택됨

## 목차

머리말	3
서론	6
제 I부: 공정성, 독립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기준	8
(1) 일반원칙	8
(2) 이해상충	9
(3) 중재인의 정보공개	11
(4) 당사자에 의한 포기	13
(5) 범위	15
(6) 관계	16
(7) 당사자들과 중재인의 의무	18
제 II부: 일반기준의 실무적용	20
(1) 포기불가 적색목록(Non-Waivable Red List)	22
(2) 포기가능 적색목록(Waivable Red List)	23
(3) 주황색목록(Orange List)	25
(4) 녹색목록(Green List)	29
2014 지침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Chancery House, 53-64 Chancery Lane, London WC2A 1QS, United Kingdom  
Tel: +44 (0)20 7842 0090 www.ibanet.org All Rights Reserved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2024

본 저작권 통지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는 그 어느 일부라도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 없이 복사, 기록 기타 정보 저장 및 열람 시스템을 포함한 어떠한 전자·기계적 형태나 수단을 통해서도 복제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 **A Note on Translations**

This document was originally prepared in English by a working group of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and was adopted by IBA Council Resolu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s and the translations into any other language,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Translated by: Boram Hong, Jaeyoung Shin, Eungkyung Park of Kim & Chang, Republic of Korea

# 머리말

최초의 IBA 국제중재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지침(*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본 지침')은 2004년 IBA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ttee)에 의해 (1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를 통해) 마련되고, IBA 이사회(Council)에 의해 채택되었다. 본 지침은 2004년 발표된 이래 국제중재 커뮤니티에서 널리 인정받아 왔고,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및 특정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연성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적색, 주황색, 녹색 목록으로 구성된 획기적인 신호등 시스템(traffic-light system)은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실무가들은 본 지침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중재기관들과 심지어 법원에서도 본 지침을 실무현장에서 있어서의 필수 원칙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본 지침이 중재실무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떻게 진화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규칙 및 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10년마다 평가하는 IBA 중재위원회의 관행에 따라, 본 지침은 2014년 (2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추가 검토에 따라) 처음 개정되었다. 본 지침의 개정 여부 및 개정 방향은 실무에서 본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 지침의 명확화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널리 인정받는 원칙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 목적이 해당 원칙의 근본적인 토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를 개선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민감한 작업이다. 본 지침이 상사중재나 투자중재를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중재(예: 해상, 스포츠 또는 원자재 중재) 및 법조인 및 비법조인이 중재인인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됨에 따라, 본 지침의 엄격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IBA 중재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Samaa Haridi (2022)와 Valeria Galíndez (2023), 그리고 IBA 중재 지침 및 규칙 소위원회(Arbitration Guidelines and Rules Subcommittee, 이하 "소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Erica Stein 의 지도 아래, Claudia Frutos-Peterson 의 이후 합류로 2014년 지침의 개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소위원회가 2022년에 중재 실무가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지침이 여전히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이나 본 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본 지침의 현대화 및 세부 조정이 필요한 영역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i) 중재인 정보공개; (ii) 제3자 자금지원; (iii) 이해상충; (iv) 여러 관할권의 법률 전문가를 위한 조직 모델(예: 법정변호사 사무실 및 조합 등); (v) 전문가 증인; (vi) 국가 또는 국가 기관 및 하위 기관; (vii) 비법조인 중재인; (viii) 소셜 미디어. 이에 따라, 대책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팀으로 나누어 각 영역을 검토하였으며, 아홉 번째 팀을 구성하여 2022년 설문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영역이 본 지침 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sup>1</sup> 대책 위원회의 팀장과 위원(총 60명 이상)은 1년

---

<sup>1</sup> **중재인 정보공개:** André Abbud; Julie Bédard; Juliana Castillo; Kun Fan; Jennifer Kirby; Noradèle Radjai;

안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은 전 세계 수백 개의 중재 기관을 포함해 일반 대중의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다. 초안에 대한 의견은 수집 및 분석되었고, 특히 의견 가운데 컨센서스가 확인되는 경우, 최종안 채택 시 고려되었다.

2024년 지침의 서론은 본 지침과 금번 개정의 포괄적인 목표를 설명하며, 이는 이후 공정성, 독립성 및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기준(제1부) 및 상황 목록을 통한 일반기준의 실무적용(제2부)으로 이어진다.

본 지침에 대한 개정은 제1부에 명시된 일반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일반기준은 언제나 고려되어야 하며, 이해상충과 중재인 정보공개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제2부의 적용목록보다 하위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부의 적용 목록에 대한 개정이 제1부의 강화된 일반기준을 고려하여 해석될 때, 본 지침이 현재 중재 커뮤니티 및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중재인에게 기대하는 정보공개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BA 중재위원회는 Valeria Galíndez와 Erica Stein 및 2명의 TF 사무국 직원분들<sup>2</sup>과 TF 팀장분<sup>3</sup>들의 방대하고 뛰어난 작업에 특히 감사드린다. 또한, 슬기로운 해결책을 제공해 준 전 IBA 의장이자 중재 위원회 공동의장인 David Rivkin 의 지속적인 지원 및 열정에 대해서도 특히 감사드린다.

본 지침은 [www.ibanet.org/resources](http://www.ibanet.org/resources)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Mohamed S. Abdel Wahab; Galina Zukova. 제3자 자금지원: Crina Baltag; Alfredo Bullard; Zarina Chinoy; Alice Fremuth-Wolf; Tom Glasgow; Duncan Watson. 이해상충: Lawrence Boo; Ji Hi Jung; Silvia Marchili; Lucy Martinez; Alexis Moure; Mallory Silberman. 여러 관할권의 법률 전문가를 위한 조직 모델: Folashade Alli; Pierre Bienvenu; Beata Gessel; Sarah Grimmer; Barton Legum; Louise Reilly. 전문가 증인: Daniela Bambaci; Pierre Burger; Stephanie Cohen; Frank Hormes; Jan Heiner Nedden; Jiří Urban. 국가 또는 국가 기관 및 하위 기관: Nicolas Angelet; Giedrė Aukštuolienė; Dyalá Jimenez; Pál Kara; Christian Leathley; Sami Tannous. 비법조인 중재인: Richard Apphun; Lauren Friedman; Marily Paralika; Sherina Petit; Paul Tichauer; Ren Qing. 소셜 미디어: Dániel Dózsa; Ricardo Dalmaso Marques; Sylvie Bebohi Ebongo; Christa Mueller; Harold Noh; Yoshimi Ohara; Sofia de Sampaio Jalles. 기타 사안: Benan Arseven; Hilde van der Baan; David Blackman; Daniel Heilbron Chrispim; Sandra González; Khaled Abou El Houda.

<sup>2</sup> David Blackman; Viva Dadwal.

<sup>3</sup> Nicolas Angelet; Crina Baltag; Dániel Dózsa; Sarah Grimmer; Jan Heiner Nedden; Marily Paralika; Louise Reilly; Mallory Silberman; Hilde van der Baan; Galina Zukova.

**Xavier Favre-Bulle**

**Chiann Bao**

*중재위원회 공동의장*

2024년 2월

# 서론

1. 국제중재에서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파악 및 평가하고, 중재기관과 법원이 기피신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해상충의 문제는 미묘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답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IBA 중재위원회는 2004 년 (i)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의 근본적인 중요성, (ii) 사적자치의 원칙, (iii) 정보공개 시기, 성격, 범위, 부담 및 기타 실무적인 사항들, 그리고 (iv) 사소한 기피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및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끝에 이 주제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2. 2004 년 지침은 당시 존재하던 기준들의 적용에 있어 명확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에 2004 년 지침은 '일반기준 및 기준에 대한 해설(General Standards and Explanatory Notes on the Standards)'(이하 '일반기준')을 규정하였다. 일반기준은 이해상충의 존재 여부(객관적인 '합리적인 제 3 자 기준' 채택)와 공개 의무(주관적인 '당사자의 관점 기준' 채택)를 평가하기 위한 1 차 자료로서 개발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기피신청이나 중재인의 자진 사임 또는 경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년 지침은 일반기준을 분명히 보여주고, 중재인의 정보공개를 돕고, 당사자들이 공개된 정보가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들[적색(Red), 주황색(Orange), 녹색(Green) 목록으로 구분]을 열거하였다. 적색 목록에 해당하는 상황들의 경우,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녹색 목록에 해당하는 상황들은 이해상충이나 그러한 외관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황색 목록에 해당하는 상황들은 주어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반기준 제 3 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위 목록(이하 '적용목록(Application Lists)')은 본 지침의 2014 년 개정에서 업데이트되었다. 2024 년 개정에서는 일반기준과 적용목록 둘 다 2014 년 이후의 실제 용례를 고려하여 추가 업데이트 및 개선되었다.
4. 본 지침은 이하 일반기준에 명시된 원칙들에 확고하게 기반을 둔 현재의 국제적 모범 실무에 대한 IBA 중재위원회의 이해를 담고 있다. 일반기준과 적용목록은 여러 관할권의 법령, 실무관행, 판례법, 기타 결정례 및 국제중재의 주요 참여자들의 판단과 경험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본 지침은 국제중재의 온전성(integrity), 평판 및 효율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 대리인, 중재인 및 중재기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간의 균형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2014 년 지침 개정을 위한 TF 팀과 2021 년 및 2023 년 소위원회는 주요 중재기관들, 사내 변호사 및 기타 국제중재 관련자들과 IBA 의 연례회의나 국제중재 커뮤니티와의 기타 회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의견을 추가로 구하고 이를 고려하였다. 제공된 의견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였고 많은 의견이 채택되었다. IBA 중재위원회의 안건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준 많은 기관과 개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5. 본 지침은 당사자의 대리인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중재인이 법률가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국제중재에 적용된다.
6. 본 지침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선택한 국가의 법률, 중재규칙, 행동규칙 또는 기타 구속력 있는 문서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2004 년 및 2014 년 지침과 IBA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기타 규칙 및 지침이 그러했듯이 본 개정 지침 또한 국제중재 커뮤니티에서 널리 인정받고 당사자, 대리인, 중재인, 중재기관 및 법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IBA 중재위원회는 본 지침이 지나친 형식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적용되는 것을 권고한다.
7. 본 지침 제 1 부는 모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들을 포함한다. 제 2 부에 포함된 적용목록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상황을 열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IBA 중재위원회는 본 지침의 개선을 위해 본 지침의 실제 용례를 연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8. IBA 는 1987 년, 국제중재인 윤리 규칙(Rules of Ethic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은 본 지침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본 지침에서 논의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본 지침에서 다루는 사안에 한하여 본 지침은 위 윤리 규칙에 우선 적용된다.

## 제 1 부: 공정성, 독립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기준

### (1) 일반원칙

모든 중재인은 중재인 선임을 수락하는 시점에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최종 판정의 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일반기준 제 1 항에 대한 해설:

본 지침의 바탕이 되는 기본원칙은 각 중재인이 중재인의 직책을 수락하는 시점에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상태이어야 하고, 관련 규칙에 따른 최종 판정의 정정 또는 해석의 기간(해당 기간이 알려져 있거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함)을 포함한 중재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의무는 관련 법원 또는 기관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재인의 의무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정이 있을 후, 관련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정정 또는 해석이 완료되거나 그에 대한 청구 기한이 경과하거나,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거나(예컨대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 달리 중재인이 더 이상 관할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소멸한다. 판정취소 또는 기타 절차 진행 후 분쟁이 다시 동일한 중재판정부로 환송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및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하여 새롭게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2) 이해상충

- (a) 중재인은 본인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 중재인 선임을 거절하여야 하고, 이미 중재가 시작되었다면 중재인으로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한다.
- (b) 관련 사실과 정황을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 3 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실이나 정황이 존재하거나 선임 이후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일반기준 제 4 항의 요건에 따라 중재인의 선임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c) 관련 사실과 정황을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 3 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재인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사건의 실제 외에 다른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의심이 있다.
- (d) 포기 불가 적색 목록(Non-Waivable Red List)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 **일반기준 제 2 항에 대한 해설:**

- (a) 중재인은 본인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인 선임을 거절하거나 업무 속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절차의 진행 단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지침은 중재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다.
- (b) 일반기준 제 2 항의 '공정성이나 독립성(impartiality or independence)'이란 문구는 중재인의 결격과 관련하여 널리 채택되어 있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모델법(Model Law) 제 12 조에서 유래되었다. 모델법 제 1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결격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인 것('합리적인 제 3 자 기준')으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외관을 기초로 한 판단기준(appearance test)을 적용한다. 선임을 거절하거나 업무 속행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인은 관련 사실이나 정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객관적인 기준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중재인은 객관적인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기준 제 4 항에 따라 그 객관적인 이해상충이 포기되지 않는 한, 일반기준 제 2(b)항에 따라 선임을 거절하거나 업무 속행을 거부해야 한다.
- (c) 정당한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중재인은 선임을 거절하거나 업무 속행을 거부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의 예로 포기불가 적색 목록에 기술된 상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의심의 존재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일반기준 제 3 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 예시로 포기가능 적색목록에 기술된 상황 등이 있다.

- (d) 정당한 의심을 기준으로 채택한 법률이나 규칙이 그 기준을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일반기준은 그 판단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맥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재판할 수는 없으므로 중재인과 당사자가 동일인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포기할 수 없다.

### (3) 중재인의 정보공개

- (a)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실이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중재인은 선임을 수락하기 전에 또는 그 이후 그러한 존재를 알게 되는 즉시 당사자들, 중재기관 또는 기타 선임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그러한 기관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의 규칙에서 요구하는 때에) 및 중재판정부 내 다른 중재인들에게 해당 사실이나 정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일반기준 제 7(d)항의 중재인의 조사의무에 따라, 중재인은 사실과 정황이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 (b) 장래에 발생 가능한 사실 및 정황으로부터 예상되는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사전에 선언하거나 이의 제기를 포기하더라도 중재인이 일반기준 제 3(a)항에 따른 중재인의 정보공개 의무를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 (c) 일반기준 제 1 항과 제 2(a)항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한 중재인은 공개된 사실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따라서 중재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지명 내지 선임 되었을 때 이미 거절하였거나 사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 (d) 중재인이 특정 사실이나 정황을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 (e) 만약 중재인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직무상 기밀 규정이나 기타 직무수행 관련 규칙으로 인해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을 거절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 (f) 중재의 진행 단계는 사실이나 정황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중재인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g)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나 정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거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일반기준 제 3 항에 대한 해설:**

- (a) 일반기준 제 3(a)항에 따른 중재인의 정보공개 의무는 당사자들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만한 사실이나 정황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제공 받을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다. 일반기준 제 3(d)항은 특정 사실이나 정황이 공개 대상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는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녹색목록에 열거된 상황과 같이 이해상충의 외관 및 실제 이해상충이 일반기준 제 2 항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의심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들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일반기준 제 3(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 공개로 인하여 공개된 사실이 중재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기준 제 3(a)항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는 그 성격상 계속적인 의무이다.

- (b) IBA 중재위원회는 중재인 후보자들이 장래에 발생 가능한 사실이나 정황 및 그로부터 예상되는 이해상충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는 이른바 사전 포기(advance waiver)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공개가 있었다고 하여 일반기준 제 3(a)항에 따른 중재인의 계속적 정보공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지침은 그 외에 사전 선언(advance declaration) 또는 사전 포기의 효력유무와 효과에 대하여 달리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사전 선언이나 사전 포기의 효력유무와 효과는 선언이나 포기의 문언, 구체적인 정황 및 관련 법률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c) 정보공개가 이해상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보를 공개하는 중재인은 공개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명되었을 때 거절하거나 사임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는 중재인은 스스로 중재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정보공개 목적은 당사자에게 이러한 중재인의 평가에 동의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관련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본 일반기준은 정보공개 자체가 중재인을 결격시키기에 충분한 의심의 존재를 의미한다거나 심지어는 결격을 추정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중재인에 대한 기피는 위 일반기준 제 2 항에 대한 해설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d-f) 일반기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정보공개나 결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재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중재인이 공개 여부 또는 선임 거절이나 중재인 직무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해당 사실과 정황에만 관련될 뿐 절차의 진행 단계나 사임의 결과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실무적 차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재인이 중재 개시 이후에 자진 사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재 진행단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본 일반기준과는 맞지 않다.
- (g) 일반기준 제 3(c)항에 대한 해설에서 설명된 것처럼 기피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사실의 당연한 귀결로 일반기준 제 3(g)항이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나 정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거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 (4) 당사자에 의한 포기

(a) 당사자가

- (i) 중재인이 공개한 정보를 수령한 후, 또는
- (ii) 달리 중재인에 대해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이나 정황을 알게 된 후로부터

30 일 이내에, 아래 일반기준 제(b)항 및 제(c)항의 적용을 전제로, 당해 중재인에 대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사실이나 정황에 대하여 중재인의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절차에서 해당 사실이나 정황에 근거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당사자는 절차 개시 시점 또는 중재절차 진행 중 합리적인 조사가 수행되었다면 파악되었을 일반기준 제4(a)항(ii)에 따른 사실이나 정황을 알게 된 것으로 간주한다.

(b) 포기불가 적색 목록에 명시된 사실이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 제기 포기나(일반기준 제 3(b)항에서 고려되는 선언 또는 사전 포기를 포함한다) 해당 후보를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로 본다.

(c) 포기가능 적색 목록(Waivable Red List)에 예시된 바와 같은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사람은 중재인 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중재인으로서의 선임을 수락하거나 중재인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 (i) 모든 당사자들, 모든 중재인들 및 중재기관 또는 기타 선임 권한을 행사한 기관(해당하는 경우)이 그 이해상충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있고,
- (ii) 모든 당사자들이 그 이해상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중재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d) 중재인은 어느 절차 단계에서나 화해, 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재인은 그러한 중재인의 행위가 중재인 직무를 중단시키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합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한 명시적인 합의는 중재인이 해당 절차에 참여하거나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간주된다. 중재인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최종적 합의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포기에 계속적으로 구속된다. 다만, 일반기준 제 2(a)항에 따라, 그리고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이 화해 과정에 참여한 결과 추후 중재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다면 중재인은 사임하여야 한다.

**일반기준 제 4 항에 대한 해설:**

- (a) 일반기준 제 4(a)항에 따르면 어느 당사자가 30 일 이내에 이해상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30 일 기한은 정보공개 과정을 포함하여 해당 당사자가 관련 사실이나 정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 (b) 일반기준 제 4(b)항은 포기불가 적색목록에 해당하는 사실과 정황을 일반기준 제 4(a)항의 범위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다. 일부 중재인이 장래에 발생 가능한 사실이나 정황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 포기를 요청하는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중재인의 이의 제기 포기 요청과 무관하게 일반기준 제 3(b)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이나 정황은 중재인의 계속적 정보공개 의무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c) 포기가능 적색목록에 예시된 것과 같은 심각한 이해상충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해당 후보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자율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중재인에 대한 필요 사이의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포기가능 적색목록에 예시된 것과 같은 심각한 이해상충을 가진 사람은 당사자들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이의 제기를 포기한 경우에만 중재인 직을 맡을 수 있다.
- (d) 중재판정부가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분쟁을 화해로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 확립된 관할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관할도 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위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것은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 제기 포기로 간주된다. 일부 관할권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으로 이와 같은 동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에 따라서는 명시적 동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변론 기일에서 동의함으로써 의사록 또는 속기록에 기록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결격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재인의 화해 과정 참여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일반기준은 화해 과정이 실패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 포기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을 명시하였다. 당사자들은 명시적 동의 함에 있어, 중재인이 화해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 중재인 사임 등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 (5) 범위

- (a) 본 지침은 선임 방식을 불문하고 판정부 의장, 단독 중재인, 공동 중재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b) 개별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의 중재/행정서기 및 보조인은 중재인과 동일한 독립성 및 공정성 유지의무의 적용을 받고,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의무가 중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준수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

### **일반기준 제 5 항에 대한 해설:**

- (a) 중재판정부의 모든 구성원은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본 일반기준은 단독 중재인, 판정부 의장, 당사자 지정 중재인, 기관 지정 중재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 (b) 일부 중재기관은 중재/행정서기와 보조인에게 독립성 및 공정성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행정서기 및 보조인은 중재인과 동일한 독립성 및 공정성 유지의무(정보공개의무 포함)를 부담하고,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의무가 중재의 모든 단계에서 준수되도록 할 책임을 가진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서기, 행정서기 및 보조인과 개별 중재인의 중재/행정서기 및 보조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6) 관계

- (a)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법률사무소 또는 자신의 고용주와 동일시되지만, 잠재적 이해상충의 존재 유무 또는 정보공개 필요성을 판단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정황의 관련성을 검토할 때에는 중재인 소속 법률사무소 또는 고용주의 활동 및 중재인 소속 법률사무소 또는 고용주의 조직 구조 및 실무 관행과 중재인과 법률사무소 또는 고용주와의 관계를 각 개별 사건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가 일방 당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이해상충의 발생 원인 또는 정보공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당사자가 중재인 소속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와 관계가 있는 집단의 구성원인 경우 역시 각 개별 사건별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 사실 자체가 이해상충의 발생 원인이나 정보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b) 일방 당사자에 지배적 영향을 갖거나, 일방 당사자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중재에서 내려질 판정에 따른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은 해당 일방 당사자와 동일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 (c) 일방 당사자가 지배적 영향을 가지는 법인 또는 자연인은 해당 일방 당사자와 동일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일반기준 제 6 항에 대한 해설:

- (a) 대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또는 회사나 기타 기관에 고용된 변호사를 포함해 당사자가 원하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국제중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사이의 형량이 필요하다.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소속 법률사무소 또는 자신의 고용주와 동일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중재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의 업무가 자동적으로 이해상충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i) 중재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등 그 활동과 (ii) 법률사무소 또는 고용주의 조직 구조와 실무 관행 및 (iii) 해당 중재인과 법률사무소 또는 고용주와의 관계 등과의 관련성이 개별 사건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기준 제 6(a)항은 당사자를 '대리인(acting for)'이 아닌 '관련된(involv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당사자와의 관계가 법적 사안을 대리하는 것 이외의 활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재의 일방 당사자가 기업집단의 일부인 경우, 이해상충에 관한 특수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기업 지배 구조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칙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동일 그룹사 내에서 다른 법인과 의 계열관계를 둘러싼 구체적 정황과 해당 법인과 중재인 소속 법률사무소 또는 고용주와의 관계를 각 개별 사건별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 법률 실무 구조의 발전에 따라, 일반기준 제6(a)항의 취지상 법률사무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일반기준 제6(a)항의 취지상 법률사무소는 중재인이

파트너이거나, 그 직책을 불문하고 직원, 변호사, 고문 변호사 등의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무소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법률사무소가 협력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는 중재인이 그러한 다른 법률사무소와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해상충과 관련해 법정변호사 사무실(barristers' chambers)과 법률사무소를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법정변호사(barristers), 당사자 및/또는 대리인 사이의 관계들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가 요구될 수도 있다.

- (b) 특히 국제중재의 어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지배적 영향을 갖거나 중재 판정에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판정에 따른 일방 당사자에게 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있을 수 있다. 각 상황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기준 제 6(b)항은 그러한 자가 당사자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연인에 대해서 영향이나 이해관계를 갖거나 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3 자 자금제공자(third party funder) 나 보험회사는 분쟁 중인 사건의 소 제기나 방어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중재의 일방 당사자에 지배적 영향을 가지거나, 중재인의 선정을 포함해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러한 법인들이 당사자와 동일시 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 (c) 회사와 관련해, 일반기준 제 6(c)항은 모회사가 절차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그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배적 영향을 가진다면 그 자회사는 모회사와 동일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컨대 자연인이 절차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그 자연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는 소유집중회사는 자연인과 동일시 될 수 있다.

국가와 관련해, 국가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와 법적 및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는 지역 당국이나 지방 당국 또는 자치단체(autonomous agencies)와 같은 별도의 법적 단체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지배적 영향력"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기준에 반드시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단체 간 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칙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관계의 특수한 상황과 분쟁의 주요 사안과의 관련성이 각 개별 사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또는 국가 기관, 하위 조직 또는 대행기관이 중재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그러한 법적 단체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재인은 그러한 법적 단체가 국가 조직의 일부인지 또는 사인의 지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역 당국이나 지방 당국, 자치단체(autonomous agencies) 또는 국유회사 등과 같은 법인과과의 관계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7) 당사자들과 중재인의 의무

- (a) 당사자는 중재인,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들 및 중재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 경우) 기타 선임권한을 행사한 기관에 아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i) 중재인과 다음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
- 당사자
  - 동일 그룹사 내 다른 회사
  - 중재 당사자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중재 판정에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판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에게 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 (ii) 일반기준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시 중재인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당사자가 보는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b) 일반기준 제 7(a)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확보 가능한 정보 가운데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c) 당사자는 중재에 출석하는 대리인의 신원과 그 법률자문인과 중재인간의 관계(동일한 법정변호사 사무실 소속 여부를 포함한다)를 중재인,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들 및 중재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 경우) 기타 선임권한을 행사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이를 자발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인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d) 중재인은 이해상충의 유무 및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중재인이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해상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기준 제 7 항에 대한 해설:**

- (a) 당사자들은 중재인과의 어떠한 관계도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의 공개는 중재인 선임 이후에 알게 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부당한 의의가 제기될 위험을 줄이게 된다. 당사자가 중재인과 당사자(및/또는 동일 기업 그룹 내의 다른 기업 및/또는 중재 당사자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갖는 개인 및/또는 당사자가 지배적인 영향을 가지는 법인 또는 자연인)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를 불문한 모든 관계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중재 자금을 제공하는 자 등 중재 판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에게 보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중재 판정에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인 또는 자연인과의 관계로까지 확대된다.
- 당사자들이 정보공개 시 중재인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목록을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그러한 자연인 및 법인이 분쟁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b) 당사자들은 정보공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중재 당사자는 절차 개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중재의 모든 과정에서, 일반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c)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여하거나 대리하는 대리인의 신원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점에 밝혀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여하거나 대리하는 대리인의 신원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그 당사자의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며, 절차 개시 시점부터 발생한다.
- (d) 중재인은 본 지침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 제 II 부: 일반기준의 실무적용

1. 실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본 지침은 적용목록을 통해 오늘날 중재 실무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다룬다. 다만, 이하의 목록이 모든 상황을 열거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안의 결론은 일반기준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즉, 일반기준이 예시적인 적용목록보다 우선한다.
2. 적색목록은 '포기불가 적색목록'(일반기준 제 2(d)항 및 제 4(b)항 참조)과 '포기가능 적색목록'(일반기준 제 4(c)항 참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위 목록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타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한 것이다. 즉, 이와 같은 경우 관련 사실과 정황을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 3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것이다(일반기준 제 2(b)항 참조). 포기불가 적색목록은 어느 누구도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원칙에 따른 상황들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용인하겠다고 하더라도 이해상충의 문제가 시정될 수 없다. 포기가능 적색목록은 심각하지만 포기불가 적색목록만큼은 극심하지는 않은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정황들과는 달리, 일반기준 제 4(c)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이해상충의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후보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제기 포기가 가능하다.
3. 주황색 목록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이 야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한 것이다. 따라서 주황색 목록은 일반기준 제 3(a)항에 해당하는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결과 중재인은 해당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이 목록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에서는, 일반기준 제 4(a)항의 규정과 같이 당사자들이 정보공개 이후 특정 기간 내에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의 선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정보공개는 이해상충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공개 자체가 중재인의 결격 또는 결격에 대한 추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 목적은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즉, 관련 사실과 정황을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 3 자의 관점에서) 정당한 의심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검토를 원할 수도 있는 사정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정당한 의심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해당 중재인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포기불가 적색목록의 상황을 제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이익 제기가 없거나 포기가능 적색목록의 경우 일반기준 제 4(c)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락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중재인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가 중재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의 판단 권한을 가진 자가 일반기준 제 2 항에 대한 해설에서 명시된 객관적인 결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중재인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중재인이 특정 사실이나 정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추후 기피신청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선임 취소, 사후 결격으로 이어지거나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기준 제 3(g)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재인이 편파적이거나 독립성을 결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판단은 공개되지 않았던 관련 사실과 정황이 무엇인지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6. 주황색 목록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주황색 목록의 일부에서 언급된 기한 요건이 경과된 사항의 경우 정보공개 대상에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황색 목록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중재인은 어느 상황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것인지를 개별 사건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주황색 목록은 예시이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중재인이 공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당사자나 동일한 대리인이 주황색 목록에서 정한 3년 기간을 초과한 과거 시점에 수 차례 해당 중재인을 선임하였거나, 중재인이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별개의 사안에서 대리인을 겸임하는 경우 등이 여기 속한다. 마찬가지로 중재 사건 진행 중에 동일한 당사자나 중재 절차의 대리인이 해당 중재인을 다른 사건에서 선임한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서는 공개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본 지침은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 또는 진행 중인 중재절차의 일방 대리인과 동일한 판정부에서 과거에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항상 요구하지는 않으나, 중재인은 자신이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판정부의 중재인으로 또는 대리인으로 빈번하게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재판정부 내에서 불균형을 야기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개별 사건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 결과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7. 녹색목록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해상충의 외관 및 실제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예시한 것이다. 따라서 중재인은 녹색목록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일반기준 제 3(a)항에 대한 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녹색목록은 정보공개 의무에도 합리성에 기반을 둔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다. 1
8. 각 목록을 구성하는 범주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상황이 어느 목록에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목록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당한(significant)' 및 '관련 있는(relevant)' 등의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목록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적 원칙과 모범 실무를 반영하였다. 이보다 더 규범을 정의하는 것은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각 사건별로 사실과 정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1) 포기불가 적색목록(Non-Waivable Red List)**

- 1.1 당사자와 중재인이 동일인인 경우, 또는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법정 대리인이거나 중재 당사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직원인 경우
- 1.2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 또는 중재 판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인의 관리자, 이사, 관리감독위원회의 일원이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1.3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 또는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1.4 중재인이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sup>1</sup>에 현재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재인, 중재인 소속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가 그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수입을 얻는 경우

---

<sup>1</sup> 적용목록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계열사(affiliate)'란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사의 모든 회사 및/또는 중재 당사자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가지는 개인 및/또는 당사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포함한다.

## (2) 포기가능 적색목록(Waivable Red List)

### 2.1 중재인과 당해 분쟁의 관계

2.1.1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에게 당해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 또는 전문가 의견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2.1.2 중재인이 과거 당해 분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2 중재인의 당해 분쟁에 대한 직·간접적 이해관계

2.2.1 중재인이 비상장기업인 일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2.2.2 중재인의 가까운 가족<sup>2</sup>이 분쟁 결과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2.2.3 중재인 또는 중재인의 가까운 가족이 분쟁의 패소 당사자 측에게 구상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닌 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2.3 중재인과 당사자들 또는 법률자문인과의 관계

2.3.1 중재인이 현재 또는 정기적으로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를 대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나 그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수입을 얻지 않는 경우

2.3.2 중재인이 현재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대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2.3.3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과 동일한 법률사무소 소속의 변호사인 경우

2.3.4 일방 당사자의 계열회사가 중재의 분쟁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중재인이 그 계열회사의 관리자, 이사, 관리감독위원회의 일원이거나 지배적인 영향을 가진 자인 경우

---

<sup>2</sup> 적용목록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까운 가족(close family member)'이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부모, 반려자(life partner) 및 기타 친밀한 관계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 2.3.5 중재인 소속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가 과거 당해 사건에 관여하다 현재에는 중단하였고 중재인 스스로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 2.3.6 중재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가 현재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와 상당한 상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2.3.7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 그 당사자의 관리자, 이사, 관리감독위원회의 일원이거나 그 당사자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가진 자,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 또는 그 당사자의 대리인과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 2.3.8 중재인의 가까운 가족이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3) 주황색목록(Orange List)**

#### 3.1 일방 당사자와의 업무 관계 또는 당해 사건에의 기타 관여

- 3.1.1 중재인이 지난 3 년 내에 당해 사건과 무관한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를 대리하였거나, 과거 그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를 위해 자문을 제공하였거나 상담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중재인과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간에 진행중인 관계가 없는 경우
- 3.1.2 중재인이 지난 3 년 내에 당해 사건과 무관한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 계열회사의 상대방 측을 대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1.3 중재인이 지난 3 년 내에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 계열회사에 의해 2 회 이상 중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 경우<sup>3</sup>
- 3.1.4 중재인이 지난 3 년 내에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 계열회사에 의해 2회 이상 당해 사건과 무관한 사안의 모의 재판(mock-trials) 또는 심리 기일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선임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1.5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가 관련된 쟁점 또는 사안에 대한 다른 중재사건에서 현재 중재인 또는 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지난 3 년 내에 중재인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1.6 중재인이 현재 또는 지난 3년 내에 당해 사건과 무관한 사안에서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를 위해 전문가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1.7 중재인 소속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가 현재 또는 정기적으로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사무소 또는 고용주와 상당한 정도로 상업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중재인의 관여가 없으며 그러한 업무가 당해 분쟁과

---

<sup>3</sup> 해상, 스포츠 또는 원자재 중재 등 특정 유형의 중재에서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후보자 군 또는 필수 목록(mandatory list)에서 중재인이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종종 동일한 중재인을 다른 사건에서 선임하는 실무 또는 관행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목록 제3.1.3항에 따라 반복 선임에 대한 공개가 여전히 바람직하지만, 공개의 범위 및 반복 선임의 결과는 이 지침에 명시된 것과 다를 수 있다.

관계되지 않은 경우

3.1.8 중재인 소속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와 상당한 수입료 등 기타 수입을 공유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기타 법률 단체가 당해 중재 절차에서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3.2 중재인과 다른 중재인 또는 법률자문인과의 관계

3.2.1 중재인이 다른 중재인과 동일한 법률사무소 소속의 변호사이거나 고용주가 동일한 경우

3.2.2 중재인과 다른 중재인 또는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동일한 법정변호사 사무실 구성원인 경우

3.2.3 중재인이 지난 3년 내에 중재사건의 다른 중재인 또는 대리인과 공동 사업자 관계였거나 달리 관계가 있는 경우

3.2.4 중재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동일한 당사자(들) 또는 일방 당사자의 계열회사가 관련된 쟁점이나 사안에 대한 다른 분쟁사건의 중재인인 경우

3.2.5 중재인의 가까운 가족이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또는 직원이지만 당해 분쟁 업무에 조력하지 않는 경우

3.2.6 중재인과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 간에 가까운 개인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3.2.7 중재인과 중재에 출석하는 대리인 간에 적대관계가 있는 경우

3.2.8 중재인이 지난 3년 내에 동일한 대리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의해 3회를 초과하여 중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 경우

3.2.9 중재인이 지난 3년 내에 동일한 대리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의해 3회를 초과하여 전문가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 경우

3.2.10 중재인이 지난 3년 내에 동일한 대리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의해 3회를 초과하여 모의 재판 또는 심리 준비 지원을 위해 선임된 사실이 있는 경우

3.2.11 중재인과 다른 중재인 또는 중재에서의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현재 공동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지난 3년 내에 공동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2.12 중재인과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현재 다른 중재에서 중재인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경우

3.2.13 중재인과 다른 중재인(들)이 현재 다른 중재에서 중재인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경우

### 3.3 중재인과 당사자 및/또는 기타 중재 관련자와의 관계

3.3.1 중재인 소속 법률사무소가 현재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3.3.2 중재인이 과거 전문가,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와 직원 또는 파트너 등으로 직무상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 경우

3.3.3 중재인이 다음 개인 또는 단체의 관리자, 이사, 관리감독위원회의 일원과 가까운 개인적 친분관계를 가지는 경우: 일방 당사자; 중재 판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 또는 일방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 증인, 전문가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

3.3.4 중재인과 다음 개인/단체의 관리자, 이사, 관리감독위원회의 일원 사이에 적대관계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 중재 판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 또는 일방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나 증인, 전문가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

3.3.5 중재인이 전직 판사인 경우로서 지난 3 년 내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가 관여된 중요 사건을 심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3.6 중재인이 자신이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다른 사안에 대해 중재 절차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

### 3.4 기타 상황

3.4.1 중재인이 상장기업인 일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상장 계열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보유주식수 또는 액면금액 기준으로 주요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3.4.2 중재인이 출간된 논문이나 강연, 소셜 미디어 또는 온라인 전문 네트워킹 플랫폼 등을 통해 당해 사건에 대한 일방 입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이 있는 경우

3.4.3 중재인이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 기관 또는 선임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임원 또는 기타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직위에서 중재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한 경우

3.4.4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의 계열회사의 관리자, 이사, 관리감독위원회의 일원이거나 그 계열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그 계열회사가 중재의 쟁점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4) 녹색목록(Green List)**

##### 4.1 과거 표명한 법적 의견

4.1.1 중재인이 당해 중재사건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관련하여 과거 (법학 학술지 또는 공개 강연 등에서) 법적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만 그 의견이 당해 사건에 집중한 것은 아니어야 함)

##### 4.2 일방 당사자에 대한 현재 업무 수행

4.2.1 중재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와 연계 또는 제휴 관계에 있으면서 중재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 또는 중재인의 고용주와 상당한 수입료 또는 기타 수입을 공유하지 않는 법률사무소가 당해 사건과 무관한 사안에서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4.3 다른 중재인 또는 일방 당사자 법률자문인과의 접촉

4.3.1 중재인이 다른 중재인 또는 일방 당사자의 법률자문인과 동일한 직무관련 협회의 회원이거나, 사회·자선 단체 또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4.3.2 중재인과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과거 함께 중재인 직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4.3.3 중재인이 다른 중재인 또는 일방 당사자의 법률자문인과 동일한 학부나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다른 중재인 또는 일방 당사자의 법률자문인과 전문 협회, 사회단체 또는 자선단체의 임원 직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4.3.4 중재인이 다른 중재인 또는 당사자들의 대리인과 함께, 하나 이상의 회의에서 연사, 사회자 또는 주최자였거나 전문단체, 사회단체 또는 자선단체의 세미나 또는 실무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4.4 중재인과 일방 당사자와의 접촉

4.4.1 중재인이 선임 이전에 일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계열회사(또는 그 대리인)와 최초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의 내용이 중재인의 선임 가능성 및 자격충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장 후보자에 대한 논의로 제한되었고 중재인에게 당해 사건의 기본적 배경사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 분쟁의 본안이나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은 경우

4.4.2 중재인이 상장기업인 일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상장 계열회사에 미미한 수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4.4.3 중재인과 일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관리자, 이사, 관리감독위원회의 일원 또는 그 당사자나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가 공동 전문가 증인 또는 동일 사건의 중재인 등 기타 직무상 자격으로 공동의 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4.4.4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계열회사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4.5 중재인과 일방 전문가와의 접촉

4.5.1 중재인이 다른 사안의 중재인으로 활동할 때 당해 절차에 출석하는 전문가로부터 증언을 들은 경우